

울산지방법원 2022. 4. 1 선고 2021가단11042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수복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원식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2. 1. 14.

판 결 선 고 2022. 4. 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들의 사해행위취소 청구 :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2017. 10.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D에게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7. 11. 3.

접수 제228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2017. 10.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1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5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 B의 청구 : 피고는 원고 B에게 11,026,64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들의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강원 홍천군 E 지상 점포는 원래 망 F의 소유였고, 망 F이 2006. 8.경 사망함으로써 인하여 원고들과 피고, 그리고 소외 D이 각 1/4지분씩 상속받았다. D은 망 F이 사망한 2006. 8.경부터 2018. 4.경까지 위 점포에 대하여 매년 임료 3,000,000만원을 받아 왔는바, 그 중 원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연 750,000원(=3,000,000만원×1/4)은 D이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D은 원고들에게 그 중 10년간의 임료에 해당하는 각 7,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이 원고들에게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던 D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7. 10. 27. 피고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7. 11. 3.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접수 제22842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위적으로 D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D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D으로부터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받은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D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1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6475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2018. 11. 29. 울산지방법원 2018카단14641호로 '금전채권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8. 12. 5. 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이 2021. 4. 2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늦어도 피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2018. 11. 29.경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원고 B의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B의 주장

원고 B은 2012. 12. 17.부터 2013. 5. 24.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11,026,64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11,026,6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원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B이 피고에게 11,026,640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손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B의 대여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홍

별지

부동산목록

1. 강원도 홍천군 대 149㎡
2. 강원도 홍천군
[도로명주소]
강원도 홍천군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스라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88.05㎡
2층 66.06㎡

-이상-

